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법인을 제외하고는 매도되는 자산 등에 대한 실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감사의 독립성에 영향이 없는 회계법인 등이 실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협의체가 국내의 우량 회계법인을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6년 3 월10일

국 무 총 리 이 해 찬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장 관 한 덕 수

◉대통령령 제19375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자본변동표
3. 현금흐름표

제1조의3제3항중 "지배·종속관계"를 "지배회사가 2 이상인 경우 또는 지배·종속관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주식회사"를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의 회사별 직전 사업연

도말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00억원(직전 사업연도에 감사한 연결재무제표를 계속 감사하는 경우에는 1,000억원) 미만인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동항제3호에 규정된 감사인을 포함한다]"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모두가 주권상장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동항제3호에 규정된 감사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동항제1호중 "6년"을 "3년"으로, "기존 감사인"을 "기존 회계법인인 감사인"으로, "소속되어 있는 감사인"을 "소속되어 있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6년"을 "3년"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말"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사외이사"를 "사외이사(이사로서 그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1. 감사 1인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한다.

3.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제4조의2제4항중 "제4조제4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4조제4항제3호 또는 제4조제5항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변경선임 또는 선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감사계약의 원활한 체결과 감사품질의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정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보수기준 등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호중 "3월 이내"를 "3월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4월 이내"를 "4월 이내(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3월 이내)"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업연도 종료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중 "한국회계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회계연구원"이라 한다)"를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한국회계연구원"을 각각 "한국회계기준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한국회계연구원"을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동 연구원"을 "한국회계기준원"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심사한 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이해관계인 또는 기관의 통보 등에 따라 인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②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행한다.

③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 설계 및 운영에 관한 감리업무(이하 "품질관리감리업무"라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동항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품질관리감리업무 중 감사인의 감사수행 현황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

제13조의 제목 "(자료협조요청 등)"을 "(자료의 제출요구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는 그 사용목적과 요구자료의 범위 및 제출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동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1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손해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보상한도가 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산출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인 보험

2. 1사고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보험

제17조의9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적립한 연간적립금(그 적립금의 운용수익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와 관련된 감사업무에 대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이 끝난 때에는 이를 적립한 회계법인의 반환청구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 현재 그 감사업무를 원인으로 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소송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 반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변동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감사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회가 1사고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에 관한 기준을 정한 후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손해배상책임보험부터 적용한다.

②공인회계사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1사고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본변동표를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새로 포함시키고,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품질관리감리업무를 공공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를 추가(영 제1조의2제1항)

(1) 자본변동표는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의 변동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국제회계기준 또는 미국 등 여러 나라의 회계기준에서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2) 현행의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현금흐름표 외에 추가로 자본변동표를 재무제표로서 작성하도록 함.

(3) 회계에 관한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되어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은 모두 외부감사대상에 포함(영 제2조제1항제2호)

(1)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님.

(2) 회계투명성의 확보와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과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주식회사는 자산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3)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의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사유 완화(영 제4조제4항)

(1) 증권선물위원회는 부채비율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금 등의 금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권상장법인의 부채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획일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으며, 지배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 등은 「증권거래법」의 개정으로 금지되고 있어 이러한 지정 기준이 불필요함.

(2)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정기준 중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액의 비율 및 그 회사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금 등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각각 삭제함.

라.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 수행 (영 제9조제3항제2호의2)

(1)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품질관리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전부 위탁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자율적 감리수행은 감사의 품질을 향상·유지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감독이 감사보고서의 감리에 집중되어 있어 사후적 감독에 치우쳐 있음.

(2)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업무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감사인에 대한 감리업무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 나머지 감리업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함.

(3) 공공기관에 의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의 강화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향상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

2006년 3 월10일

국 무 총 리 이 해 찬

**국 무 위 원
교 육 인 적
자원부장관 김 진 표**

◉대통령령 제19376호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일부개정령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을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으로 한다.

제1조중 "교육법 제107조의3"을 "「초·중등교육법」 제51조"로 한다.

제2조중 "직할시"를 "광역시"로,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교육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된 학과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를 "교육규칙으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육법시행령 제112조"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로,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중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각각 "방송·정보통